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6
----------	-----

2023. 4. 25.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4. 7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

나. 상정의결

-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3. 4. 25.)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생활보장소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위원회를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에서 생활보장소위원회로 변경하여 의료급여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고 사회보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의 구체화(안 제1조)

나.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위원회를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에서 생활보장소위원회로 변경(안 제7조)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④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별첨)

(2) 입법예고(2023. 3. 3.~2023. 3.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문성)

- 조례안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연계된 개정안으로서 종전 복지정책과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총괄적으로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 등에 대해 심의·자문 등을 맡던 역할을 사회보장과 신설에 따라 업무를 분담·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되었음

실무협의체 심의·검토사항	구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2.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사회보장과 소관 생활보장위원회 업무
4.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심의위원회 업무
5. 저소득층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7.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집행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8조¹⁾를 반영하여 의료급여사업의 심의를 생활보장사업과 관련된 강남구생활보장위원회의 소위원회에 전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8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속시키는 내용 등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음(안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2011년 개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상에 생활보장위원회 설치가 마련된 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을 담고 있는 사항으로서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3. 4. 25.)

- 질 의 : 개정안 제1조 목적에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규정은 근거 조항을 현행화 하기 위한 목적인가. 근거 조항 확인 결과 근거 법의 다른 조항과도 연관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 법령만 규정으로 수정은 어떤가
- 답 변 :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목적과 어긋남이 없으므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겠음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166호

발의일자 : 2023. 4. 25.

제 안 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의 근거 법령 및 조항을 근거 법령으로 포괄하여 규정하여 반복적인 개정 우려를 없애고자 수정함

2. 수정내용

- 수정안 제1조의 근거 법의 조항을 삭제함(제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을 “「의료급여법」”으로 한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 ----- ----- ----- -----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p>	<p style="color: red;">제1조(목적) ----- 「의료급여법」에 ----- ----- ----- ----- ----- (후단 개정안과 같음)</p>
<p>제7조(의료급여사업의 심의)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구성된 실무협의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p>	<p>제7조(의료급여사업의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보장소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경우 위원장</p>	<p>제7조 (개정안과 같음)</p>

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을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으로, “사항을 정함”을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료급여사업의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보장소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 ----- ----- ----- -----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p>
<p>제7조(의료급여사업의 심의)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구성된 실무협의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p>	<p>제7조(의료급여사업의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보장소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다.</p>